

제1038호 2025. 12. 31.

건설동향

BRIEFing



- 2026년 건설산업의 7대 주요 이슈
- 건설 관련 정부 부처 업무계획을 통해 살펴본 2026년
건설정책
-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2026년 국토부
중점 주택정책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2)



2026년 건설산업의 7대 주요 이슈

- 2026년,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

김영덕(선임연구위원 · ydkim@cerik.re.kr)



2026년, 국내외 경제 2025년 하반기 회복세 이어질 전망

- 2025년 세계 경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의 원인이었던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우러 전쟁, 중동지역의 불안요소의 진정세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났음.
 -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확대와 소비 심리의 회복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완만하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등 신흥 국가들도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가운데, 당초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고, 인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도 예상 밖의 회복세를 보였음.
- 2026년에는 미국 관세정책 등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겠지만, 글로벌 경제는 올해와 유사한 완만한 성장세 지속 예상.
 -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년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성장률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 3.2%보다 0.1% 하락한 3.0%로 예측함.
 -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완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고유가와 강달러 시장의 적정 수준 유지로 인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의 위험 요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근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 내수가 반등하고 수출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가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투자가 회복되고 있지 않아 불안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
 - 2025년 3분기 이후 정부의 소비 지원책, 물가의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임. 기업의 설비투자도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중이고,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

- 반면, 여전히 건축부문의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건설투자는 6분기 연속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2025년 0.9%(IMF 전망치)를 웃도는 1.7~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2026년에는 회복세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임.
- 202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IMF 1.8%, 한국은행 1.8% 등으로 전망함.

〈표 1〉 주요 기관의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	OECD	IMF	한국은행	한국개발 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 연구원	한국경제 연구원
전망치	2.1%	1.8%	1.8%	1.8%	1.9%	2.1%	1.7%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조선업도 성장세가 뚜렷해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내수와 설비투자 회복세가 계속될 것인가 여부와 건설투자를 제약하는 시장 상황의 개선 여부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2026년 건설경기, 공공부문 회복세 기대되나 민간부문의 불안요소 여전, 소폭의 회복에 그칠 전망

- 2025년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3~2024년의 급락세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건설착공 면적의 지속적 감소와 건설기성의 급감, 건설투자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건설경기 회복세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 건설수주는 3/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부문의 감소에 비해 민간부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¹⁾
- 반면, 건설기성은 최근 건설안전 관련 규제의 강화, 인건비 등 비용상승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계속되었음.
- 건설투자는 3/4분기 이후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2020년 이후 계속된 하락세가 계속됨에 따라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토목 등 전 공종에서 건설투자 감소세가 계속되었음.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건설수주는 2024년 218.1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222.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에는 SOC 예산 증가 및 공공건축 부문의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의 수주 증가와 투자 확대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 주택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안전 및 품질 관련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4.0% 증가가 예상됨. 이는 공공 수주의 확대가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이나 민간 수주 증가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건설투자도 공공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소폭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국내외 저성장세 지속 그리고, 잇단 정부의 주택 수요 억제책의 시행과 인건비 등 공사비의 지속적인 상승, 안전, 품질, 노동 관련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특히, 건설투자가 2025년 8.8%(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급락한 상황이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투자의 부진이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분양 등 주택사업의 리스크가 여전한 점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 회복세가 더딜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2026년 건설산업의 7대 이슈

- 2026년은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전환과 미국 등 주요국 및 신흥국들의 재정투자 확대,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잠재력 향상에 대한 기대 등 환경변화로 건설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인력의 부족과 역량 저하, 이에 따른 건설 생산성 저하, 건설생산 비용의 지속적 증가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부각 되는 한편, AI 등 디지털 기술의 개발, 건설기업의 사업 구조 혁신의 가속화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변혁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서 2026년 건설산업에 있어 핵심이 될 이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2026년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의 영향을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등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건설산업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2026년 건설 경기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공공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시의성이 전체적인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정부의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동산 PF 문제 등 주택시장의 불안요소의 점차적 해소 속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 추진의 실효성 여부는 민간 건설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넷째, 「노란봉투법」의 시행, 「포괄임금금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노동·안전 관련 이슈가 크게 확대될 전망임.
- 다섯째,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에 따라서 건설산업 구조 혁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건설생산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저하, 규제혁신에 기반한 법령·제도 정비 그리고 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확대될 전망임.
-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에너지 관련 이슈의 글로벌 이슈화와 국내외에서 환경 정책의 강화에 따라 건축물, 건설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저감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될 전망임.
- 일곱째, 설계, 시공 등의 자동화, 시공관리, 안전관리, 건설비용의 전략적 관리 등에 있어 최근 성장하는 AI 기술의 활용은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 키워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2026년 건설산업의 7대 이슈



이슈 1 :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

- 2026년 글로벌 경제는 우-러 전쟁의 종식, 미국 관세정책의 불안감 완화, AI 투자 확대 및 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대 등 긍정적 요인들과 AI 관련 설비투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버블 우려, 그동안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 증대,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부정적 요인들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제도 2025년 하반기 이후의 완만한 성장세 기조와 정치·사회적 안정 속에서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 소비 심리의 회복 등으로 인하여 크게 호전되지는 않지만, 안정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 물가 불안 및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
 - 2025년 계속되었던 글로벌 경제침체가 2025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 및 국내 건설시장 상황 개선 등 건설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국내의 정치, 경제적 안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국내의 투자 여건이 개선으로 인하여 건설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성장의 호조세와 함께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건설시장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에는 세계 경제가 2025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가 계속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흥국들의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의 착수가 본격화되면서 해외건설에 긍정적인 영향 전망임.
 - 반면, 물가 불안, 노사 갈등, 대외 리스크 증가, 구조적 원인에 따른 저성장 압력 증가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큰 상황임.
 - 물가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글로벌 경제 환경과 환율 등 국내외 변수들에 의해 물가 불안요소가 많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간 갈등 확대 가능성 그리고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됨.
 - 물가 불안과 노사 갈등 등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의 상승,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있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게 할 수 있음.
 - 2026년 국내외의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바, 건설경기 회복세는 이러한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슈 2 : 공공 건설투자 확대 여부가 건설경기 회복 관건

-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2026년도 민간 건설시장의 큰 회복세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미분양,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건설시장 침체의 원인이 되었음. 정부의 2025년 두 차례의 수요 억제책과 공급대책 등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그쳤음.
 - 2026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의 구조적 문제, 건설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공급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급격히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건설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지연시키고 있어 정부에서도 2026년 SOC 예산을 확대하는 등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의 확장 재정을 편성하고, 정부 주도 하의 경기 부양을 도모 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SOC 예산은 27.5조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고, 국토교통부 예산은 62.8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특히,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및 공항 건설 예산이 확대되었고, 공공주택 공급에 22.8조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건설경기는 공공 건설투자의 투자 규모와 예산 집행의 시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 건설투자가 건설투자 전체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건설 및 주택 관련 규제 완화의 성과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26년 예정된 철도, 도로, 공항 등 신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관련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건설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이끄는가가 건설경기 회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공공 건설투자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를 제약하는 건설 및 주택 관련 규제의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가가 중요함. 이에 따라 건설 및 주택 관련 각종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공공 건설투자의 성과를 좌우할 전망임.
 -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있어선 지역의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슈 3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

- 정부는 2025년 9월,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였고, 최근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등 공급 성과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아울러 역대급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예고된 상황임.
 - 정부는 2025년 9월, '9·7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주택을 착공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체계 전환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한 상황임.
- 주택공급 대책의 본격적 시행 및 추가 공급 대책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공급 부족의 누적에 따라 공급절벽이 심화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공급량과 공급시기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주택 관련 전망기관들은 2026년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²⁾ 이는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비용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표 2〉 2026년 주택가격 전망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예
					1~9월	1~12월예	
매매	전국	9.9	-4.7	-3.6	0.1	0.2	0.4
	수도권	12.8	-6.5	-3.6	1.4	1.3	1.5
	지방	7.4	-3.0	-3.5	-1.0	-0.8	-0.5
전세	전국	6.5	-5.6	-5.1	1.3	0.2	1.0

주/자료 : 2025년 연간과 2026년은 전망치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년 11월.

- 2026년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정부 주택정책에 있어 주택공급량 및 공급 속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2026년에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3%, 주택산업연구원은 2.5%로 전망함.

- 이를 고려할 때,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가 주택경기의 회복과 이에 따른 건설 경기침체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상승한 자재비·인건비 등 제반 건설비용으로 인해 시장기대만큼 낮은 분양가책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권 보장 관련 입법의 시행으로, 주택공급 제약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의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임.
 - 결국,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실효성에 따라 건설 경기 회복세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슈 4 : 건설현장의 노동·안전 이슈 증대

- 2026년 ‘노란봉투법’이라 일컬어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건설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다수의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노조의 교섭력 강화에 따라 인건비 상승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기지연과 비용상승으로 인하여 건설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임.
- 2025년, “건설안전 종합대책(9·15)”,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8·20)”이 본격 적용되는 2026년에는 건설산업의 안전활동 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이 크게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잇단 대형 건설현장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움직임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고를 낼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담은 “건설안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 발생업체 감점 강화 등 건설안전 평가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설산업 안전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이후 본격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있어선 노동 및 안전 관련 이슈들의 지속적인 확대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특히,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은 어려움이 배가될 전망임.

- 건설업계는 최근 안전·노동 관련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건설생산비용의 증가와 공기지연, 법적 책임 증가 등 건설현장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음.
 - 특히,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에 한계가 있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에 있어선 노동·안전 규제의 강화 움직임에 실질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
-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의 대응지침 등 가이드 라인과 중소 건설기업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안전관리방안 등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슈 5 :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몇 년 동안 가속화된 건설 경기침체와 글로벌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 건설산업 내외부의 수요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건설산업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음.
 - 건설산업 내적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저하되는 가운데 건설생산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생산성과 직결된 인력의 역량 저하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 확장되고 있음.
 - 외적으로는 건설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건설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안전 강화 등 산업 기반에 대한 혁신의 요구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첨단 산업으로의 이미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2026년 건설경기의 회복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됨.
 - 첫째, 건설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영역과 시장의 확대임. 수요자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차별화된 건설상품 및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기존 건설영역을 넘어 타 산업과의 융복합의 확대를 통한 신상품,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산업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둘째, 건설생산의 혁신임. 기존 건설생산방식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 모듈러 생산 등 탈현장 건설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첨단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등 기존 건설산업 생산 활동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셋째,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요구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임.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

어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요구에의 전략적 대응은 필수임. 사회적 통합과 각종 사회문제에의 해결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건설상품과 서비스의 확충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산업의 미래 성장 로드맵의 구축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혁신 활동이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최근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의 논의는 정부, 건설업계 및 건설산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혁신 추진의 논의와 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슈 6 : 글로벌 환경·에너지 이슈 확대에의 대응

- 20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기후변화 정책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크게 확대되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주요 주와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후공시 제도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2025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통해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고, 새로운 NDC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에서 공약사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 소관 기후 업무와 산업부 소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 관할하는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함.
 - RE100을 주도하고 있는 ‘클라이밋 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등 우리나라 내외부에서 기후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의 압력도 커지고 있음.
 - 최근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현재 결정, 산업계 부담,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53~△61% 목표를 수립하였음.
- 최근 유럽에서 기상이변의 속출,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기후공시 입법화 등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공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주요국들의 경우,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부분 2026년 전후하여 기후공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2026년 중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환경, 에너지 정책의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건설산업에 있어 환경·에너지 이슈의 확대는 새로운 도전이자, 건설산업의 미래 사업영역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됨.
 - 새롭게 수립된 NDC에서 건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4.2~22.8백만톤으로 매우 공격적 목표가 수립됨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실천 가능한 건축물 및 건설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마련과 시행에 대한 논의가 건설산업 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의 성장과 함께 환경, 에너지 관련한 건설산업의 참여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모델 구축 및 이행 등에 대해 건설업계의 대응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임.

이슈 7 : AI,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 키워드

- AI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건설기업들도 AI 확산의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AI의 성장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에도 생산, 영업, 재무,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AI 기술은 경영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건설기업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먼저, AI 기술의 건설산업에의 적용 확대는 건설생산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사업의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인력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역량 저하라는 점에서 건설생산 과정에서 AI와 로보틱스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자동화의 확산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정 및 품질관리 상, 데이터에 기반 AI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에 활용하여 공정률의 예측, 공정의 최적화, 재고관리에 활용하여 생산성,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딥러닝,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시험 및 검사, 품질, 오시공·재시공의 방지 등을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과 낭비 요소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더 나아가 민간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설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있어 AI 기술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AI의 다양한 기술들을 기준 사업영역의 확장이나 완전히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에 활용할 수 있음. 특히, 건설기업 제공하는 주택 등 건설시설물 및 건설서비스에 AI 기술이 접목될 경우, 건설시설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AI 기술 융합은 기존 건설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으며, AI를 활용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쉽과 생태계 구축은 건설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확장과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최근 건설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인력, 재무 등 경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설기업의 경영관리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업의 경영 현안이 되고 있는바, AI는 건설산업의 혁신에 있어 핵심 키워드로 성장이 전망됨.

2026년,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는 한 해

- 2026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종합해 보면, 2025년에 비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많아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
- 정부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공공 건설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바,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필요성이 있음. 특히,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유도하는 정책·제도의 혁신과 기술개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업에 있어 2026년은 변혁의 시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새롭게 성장하는 기술과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생산, 영업, 재무 등 경영 전반의 혁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경영 역량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술, 인력, 재무 등 핵심 경영자원의 확보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건설 관련 정부 부처 업무계획을 통해 살펴본 2026년 건설정책

- 침체된 산업 활력 제고 정책과 건설안전·공정(하도급)·노동 규제 및 처벌 강화 정책 간 혼선의 한해 예상 -

전영준(연구센터장 · yjjun@cerik.re.kr)



예년보다 빠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살펴본 2026년 건설 정책

- 통상 새해 1~2월에 이루어지던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1~2개월 빠른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짐.
 - 현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업무보고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되었다는 점 또한 이색적인 상황임.
- 이에 본 고는 제9회 지방선거('26.6.3) 등 대내외 정책 변수가 많은 병오년(丙午年) 새해 건설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응 방향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건설 관련 6개 정부 부처의 2026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건설 정책 방향을 틀어봄.
 - 다만, 건설정책은 본 고를 통해 살펴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외에도 모든 부처에 걸쳐 일부나마 연계되어 있으며, 직간접적 건설물량 관련 정책과 후술할 주택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본 고에서는 이를 고려치 않은 한계가 있음.



국토부 : 예정된 정책의 계속된 추진과 건설안전·공정 노동환경 정책 중점 시행

-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을 ①균형 성장, ②주거 안정, ③지속 성장, ④국민 안전, ⑤교통 혁신의 5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함.
- 이중 침체된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관련하여 ‘지방 SOC 뉴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올해 11월 既 발표³⁾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3) 관계 부처 합동(2025.11.19),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25-10-2.

위한 가점 확대 등 우대방안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 지방 미분양 주택 완화를 위한 LH 직접매입 확대 추진 계획의 3가지 사항임.

-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해외진출 확대의 3대 방안 추진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함.

〈표 1〉 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계획 내 포함된 건설경기 활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건설경기 활력 제고 계획	
□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 및 미분양 해소 지원	
○ 노후 SOC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중점 투자 [*] 하는 '지방 SOC 뉴딜' 추진 ('26, 특별법 제정 추진)	* 10조원 재정투자 시 생산효과 20조원, 고용창출 10.8만명, 경제성장을 0.76%p 상승 기대
○ 신규 SOC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가점 확대 등 우대방안 마련('26.1 시행)	
○ 지방 미분양 주택 완화를 위해 LH 직접매입 확대 추진(5천호, '26)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주력산업 혁신) 계획	
□ 철도·건설·항공·물류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 스마트 건설(AI·디지털) 기술실증 등 생태계 조성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 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청년 유입 촉진	* 등급별 기능교육 확대('26), 우수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 맞춤형 수주전략 [*] , G2G 협력 강화 등을 통해 K-건설 해외진출 확산	
* (중동) 신재생에너지, 교통인프라, (동남아) 철도·공항·도시개발, (중앙아시아) 플랜트·도시 등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목적 및 건설 현장 안전 확보와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을 함께 제시함.

〈표 2〉 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계획 내 포함된 건설산업 규제 및 처벌 강화 계획

주거환경 개선	
○ (총간소음) 공공주택에 선도적으로 총간소음 방지설계를 강화하고, 총간소음 사후검사도 내실화 [*] ('26년 上)하여 불편 없는 주거환경 조성	* 성능검사 샘플 수 : 전체 세대의 2% → 3~5%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 (하자관리) 대행업체 등 제3자 사전방문 허용, 지방정부 품질점검 조기화(준공 직전 → 시공 중) 등 품질 제고('26년 上)	

근로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中
<p>□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쪼 단계(발주·설계·시공·감리)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 처벌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26년 上,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AI를 활용한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불법하도급 근절 추진 * 예 : 업체 경영·재무정보, 수주·하도급정보 등 200여개 지표 분석으로 의심 현장 추출○ 공사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民間공사로 확대하여 하도급업체·근로자 등 임금체불 방지('26년 上,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 소비 효율화

- (평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제시된 상기와 같은 건설 정책 관련 사항 대부분은 기존 다른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제시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거나, 이미 입법이 계류 중인 사항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정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를 고려할 때 건설산업 위축 심화에 따른 국가 경제 전반에까지 활력 저하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마련이 뒤따르기를 희망함.
 - 특히 물량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급증하는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추진 강화를 희망함.
 - 또한, 이미 위축된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 경영활동 경색 방지 차원 규제 및 처벌 강화와 관련 하여서도 시기와 수위 조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동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과 규제 처벌 강화와의 관계 속에서 장·단점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 이 외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오랜 업역 간 갈등인 ①‘종합건설 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 ②기능인등급제와 연동된 적정임금 제 도입의 현실적 가능 수준, ③「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적정 공기공사비 산정·지급과 관련된 요구 증대 등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와 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합리적 방향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노동부 : 산업재해·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촘촘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추진

- 현 정부는 산업재해·중대재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관련 정책 추진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
 - 현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OECD 평균 수준(0.29%)으로 산재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 추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화·첨단화, △산재보험제도 혁신, △노동자 참여권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 보호 등 6가지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 기조는 2026년에도 계속될 전망임.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을 ①노동시장 격차 해소, ②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③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12대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함.
 - 이중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계획 사항은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정책 내용과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임.

〈표 3〉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계획

추진과제③ : 산업현장 위험 격차 해소 中
<input type="checkbox"/> [작은 사업장] 현장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산재 예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목” 적극활용) 지방정부, 관계부처·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전달 통로 확보 ○ (지원·감독 연계) 기술·재정 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감독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관 증원(‘25년 550명, ’26년 650명)과 함께 기술 활용(예 : 드론) 등을 통해 작은 사업장 중심 감독 대폭 확대(‘25년 2.4만개 → ’26년 5만개) - ①감독계획 사전 전파, ②계도기간 동안 「일터 지킴이」(1천명) 등 통해 기술·재정 등 실용적 지원*, ③계도기간 이후 집중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위촉하여 작은 사업장 순찰·지도(‘26년 446억 신설), 10인 미만 사업장 안전장비 신속 지원 및 지원 비율 확대(‘26년 433억 신설, 60 → 90%) - 지방정부의 작은 사업장·취약노동자(고령·외국인 등) 재해 예방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 산재예방 사업 공모(10개소 내외), 국비 100% 지원(‘26년 143억 신설)
<input type="checkbox"/> [중견 사업장 이상] 사고조사수사 및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중 책임) 중대재해 발생 시 구조·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중대재해 수사 조직·인력 대폭 확충 ○ (실효적 제재) 사망사고 다수·반복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강화,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에 재투자(산재기금에 편입)

추진과제④ : 임금·복지 격차 해소 中

- (원·하청 대화상생) 개정 노조법의 취지대로 실질적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 라인 마련,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추진
 - 특히 현장 수요가 높은 권역(예 : 서울, 중부, 울산) 중심으로 집행기구인 노동위원회·지방노동청 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밀착 지원

추진과제⑦ :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 요인에 대응 中

- (일하는 사람 보호 확대)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 대상 및 안전보건조치 확대
 - 택배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제도 신설 방안 마련 및 고위험군 대상 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26년 40억, 2.4만명)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25.9.1) 이행을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26년 말 160일('27년 말 120일)까지 단축
- (기후위험 요인 선제대응) 한파 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노동자 보호조치 법제화
 - 폭염 대비, 작은 사업장 중심 온열질환 예방 설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확대('26년 280억, +80억), 지방정부·민간과 보건조치 정보제공·지도(14만개소)
- (산업전환 위험요인 예방)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확장하여 화력발전소 철거·해체, 송·배전 시설 구축 등 발전 산업 전환 과정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 수립

추진과제⑩ :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일터 中

- (임금체불 근절)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및 도급계약 임금비용 구분 지급 등 법제도 개선, 소규모 사업장 감독권한 지방위임 법 제정 추진
 - 숨은 체불을 찾아내는 체불사건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제 실시('25년 12월~), 근로감독 확대(5.4만 → 14만, ~'27년) 및 관계 부처 협동 감독
 -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추진 및 피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용자 확대 방안 검토

추진과제⑪ : 스스로 지키는 참여형 일터 안전 中

- (안전권리 보장) 노동자의 '3대 권리'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알 권리] 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및 안전보건공시제* 도입(500인 우선)
 - *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 활동 실적·계획,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 공개
 - [참여권리]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 *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 수립 → 노사 모두 성실 이행 책임·의무 부담
 - [피할권리]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 요건 완화)
- (안전책임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모두의 참여·책임 확대
 - [사용자] 충분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비용 등 보장
 - [노동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 및 준수사항 등 포함한 안내자료 제작·보급(협·단체 활용

OPS 배포, 유튜브 등 홍보)

* 현장 기초안전수칙 준수 「집중 점검 주간」 운영(12.22~31, 건설현장 1천개소)

- [국민] 국민참여형 포상금 제도* 도입(안전난간 미설치·보호구 미착용 등 신고 시)

* 국민 누구든지 산재 위험 신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26년 111억 신설)

추진과제⑫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中

- (통합적 수급설계)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책수립 마련

-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분야별·직능수준별 수급설계 체계화 및 「외국인력 취업현황 DB」 구축
→ 내국인 고용 보완 가능 부문 중심 적정규모 외국인 활용

- (도입·숙련 개발) 도입의 투명성 제고 및 숙련형성·장기체류 트랙 마련

- 우수인재 확보 및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인력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 기능인력(E-9 등)이 숙련을 쌓으며 비전문→준숙련→숙련인력으로 전환하고, 우수인력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외국인력의 숙련 양성체계 구축(내일배움카드, 자격증·학위과정 등), 유학생의 E-9 전환 허용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 확대

- (권익보호 강화) 권리침해 예방·조치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제도 개선

- 체류자격 전체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확대

- 체류자격 관계없이 근로조건·노동안전 등 통합지원(계절노동자 점검 강화)

- 부당 대우 시 원활한 이동 가능하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하고, 산재·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 (평가) 내년 고용노동부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은 법제도적인 촘촘한 규제 마련과 처벌 강화 및 예방인프라 투자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음.

- 또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리스트 공개 확대, 집중 감독 및 점검 등의 행정적 관리 강화와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과 함께 외국인노동자 관리체계 변화 방향 모색을 중점 추진할 것임.
- 이에 타 산업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건설산업은 이에 직접적 정책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내년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사항 중 건설산업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①「노조법」 개정·시행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②기후위험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 법제화에 따른 생산환경의 변화이며, 관련 정책 마련 시 건설산업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상세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함.

- 우선 노조법 개정·시행(「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 하며, 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 해석 지침을 제시함.
- 그러나, 여전히 건설 현장 내 고용 건설기능인력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와 도급계약에서의

일반적 지시권 및 계약 외 사용자 인정 범위 등과 관련하여 건설산업 맞춤형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협업에서 많은 혼선이 예상되기에 추가적인 해석과 안내가 이루어지길 희망함.⁴⁾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촘촘한 규제 및 처벌 강화·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별·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적용, 일정 기준 충족 시 제재 경감 제도 운영, 규제 외 지원책 마련 강화 등이 함께 이루어지길 희망함.

기재부·행안부 : 건설 관련 구체적 업무계획 미발표

- 공공조달(국가 및 지방계약)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서는 관련한 구체적 업무계획은 미발표됨.

- 다만,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내년 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주요 골자를 先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 내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 등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된 정책이 발표될 것을 제시함.
- 또한,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비 부담 결정 시 지방정부 의견수렴 의무화, 실질적 포괄보조 발굴·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여 대부분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형태인 지방계약 공공공사에서의 예산 부족에 따른 장기 사업 지연 및 발주 물량 축소 등의 문제 해소가 일부나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표 4〉 관계 부처 합동 발표 예정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주요 골자(안) –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과제

① 거시경제·민생 안정	
① 경기 활성화	①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②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② 민생 안정	① 식품산업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 ②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③ 서민 생계비 경감
③ 리스크 관리	①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②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④ 국가전략산업 육성	① K-반도체 육성, ② 방산 4대 강국 도약, ③ 게임·푸드·뷰티 등 K-컬처 육성, ④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⑤ 경제혁신 본격화	①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② R&D 혁신, ③ 탄소중립·에너지전환
⑥ 新대외경제전략 추진	① 韓美 통상협상 후속조치, ② 수출시장 다변화, ③ 공급망 강화
⑦ 인적자본 극대화	① 청년·중장년 고용촉진, ② 재도전·재기지원, ③ 기술인력 양성·고등교육 혁신, ④ 저출생 대응, ⑤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③ 양극화 구조 극복(모두의 공정한 성장)	
⑧ 지역균형성장	① 지역 산업·인프라 확충, ② 지방 우대, ③ 지역관광 촉진, ④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4) 일례로 건설 현장에서는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과 별개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노동안전에 대한 사용자 판단이 혼재될 만큼 책임과 권한이 혼선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우별 해석 지침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경우는 고용의 주체에 따른 임금수당 결정 외에는 모든 영역에 걸쳐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⑨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①대·중소기업 지식·기술협력, ②기술til취 방지, ③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등 경쟁력 제고
⑩ 산업안전투자 확대	①안전투자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 ②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⑪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①임금격차 완화, ②비정형근로자 보호, ③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
⑫ 사회안전매트 강화	①서민금융 지원 확대, ②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 ③기초생보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④ 지속성장 기반강화	
⑬ 생산적 금융	①벤처투자 확대, ②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 ③MSCI 선진국 자수 편입 추진 및 WGBI 편입 준비, ④첨단산업 금융지원
⑭ 규제개혁	①데이터 공유 확대, ②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③경제형별 합리화
⑮ 재정·공공기관 혁신	①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 ②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 ③조세체납 및 국세외 수입 관리, ④공기업 혁신, ⑤국유자산 제도개선, ⑥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

공정위 : 계속된 규제 및 처벌 강화 드라이브, 경제적 제재 강화에 대한 우려

- 건설산업에서 원·하도급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업무계획은 ①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②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③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④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의 4대 핵심과제 내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2가지 추진 기반을 함께 제시함.
-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두터운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규제 및 감시 강화, 법 위반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준수율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표 5〉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

핵심과제① :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中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中
○ (하도급)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 조성
-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①지급보증 의무 확대(12.3 법사위 통과), ②빌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③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원자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12.3 법사위 통과), 주요 탈법행위 유형(쪼개기 계약 등)도 하도급법에 명시·집중점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비용 발생 시 하도급기업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원청의 성실한 협의 거부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 산업재해 빈발 분야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및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집중 점검

□ 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 강화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 확대 및 제도개선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기술탈취 직권조사 대폭 확대

-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증거확보·입증부담 애로 해소(하도급법 개정)

*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법정외 진술녹취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공정위 조사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가해기업에게 구체적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여

- 중소기업 기술자료·비밀보호 인식개선·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교육 강화

○ 익명제보센터 강화를 통한 甲乙 분야 감시 강화

- 제보기업이 특정되지 않도록 접수단계부터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조사 단계에서도 넓은 범위로 조사(예: 협력사 전반 직권조사) 실시

- 하도급(기술탈취 포함), 유통·대리점, 가맹 분야의 익명제보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경험많은 조사관 중심으로 전문조사팀 운용

□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 中

○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등 적용제외 검토

○ (노조 등) 노동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무자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 검토(의원입법안 기발의)

* 제도개선 TF 운영('26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 등 개선안 마련, 하반기 법 개정 추진)

핵심과제② :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中

○ 불공정행위 제재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강제 조사권 도입 등)도 검토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 (분쟁조정 활성화) B2B 분쟁조정의 효율성·실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 △간이조정절차 도입, △감정·자문제도 도입, △집단조정 확대, △공정거래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추진기반① :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 민생경제(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167명 증원)

- (본부)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조사인력(+75명)과 경제·데이터 분석 인력(+23명) 및 심의보좌 인력(+19명)을 확충하여 신속히 사건 처리

- (지방) 현 서울사무소의 과대한 관할(서울·경기·인천·강원)을 조정하여 경인사무소(경기·인천 관할)를 신설(+50명)하고 수도권 민생 신고·민원 적시 대응

→ 직권조사 확대를 통한 법 위반 억제력 강화 및 사건처리 기간 단축

○ 지역 현장의 불공정행위 신속 처리를 위해 하도급법·가맹법·표시광고법 위반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시정권고 부과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법률명	(예) 지방정부 위임·위탁 가능 대상 행위
하도급법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미공개,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금액 미지급

○ 사건처리 全 단계별(접수-조사-심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접수) '민원처리 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 1차적 민원 필터링 기능 강화
- (조사) '주요사건 신속처리팀' 운영을 상시화하여 주요민생 사건 집중 처리
- (심의) 비상 심의체제 가동 및 심의 개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심의기간 단축
 - * △부위원장 주재 소회의 운영, △주 1회 → 주 2회 소회의 개최, △서면심의(약식) 확대 등

○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및 알 권리 제고

- (이의신청 법제화) 신고인이 심사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공정거래법 개정)
 - * (現) 사건절차규칙 등 지침을 통해 이의절차 운용 중 → (改) 공정거래법상 명문화
- (의견청취 확대) 신고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건 심의 前 실시하는 의견청취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 의견수렴 확대(고시 개정)

추진기반② :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산정 방식 등에 대한 개정과 과징금 체계의 개편

- * '과징금 제도개선 TF' 구성·논의('25.11~)

- ①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효과적인 반복 법 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과징금고시 개정, ~'26년 上)
 - * (과징금 가중) 1회 반복 시 [韓] ~20%, [日, EU 등] 50%
- ② (중대성 기준 재설정)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과징금고시 개정, ~'26년 下)
- ③ (과징금 부과율 상향)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행위를 중심으로 그 상한(정률과징금)을 현실화
 - * (시지남용 과징금 한도) [韓]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日] 10%, [EU] 30%
- ④ (부과체계 전면개편) 더욱 실효성 있게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26년)
 - * 관련 매출액 대비 부과율 상한을 적용해도 법 위반억제에 미흡할 경우 추가 가중 등
 - (예: EU는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기업 총 매출액의 10%'까지 부과 가능토록 운영)

-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처로 그 부처의 특성상 계속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산업 내 오랜 관행 및 거래 행태에 대한 고려 없는 과도한 처벌은 급격한 산업활동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 특히 경제적 제재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강화가 예상되고 지난 30일

‘경제형별·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도 그 방향의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건설산업의 경우 다수 사업장(현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 시기 중복 법 위반행위가 복수 적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1회 반복 및 위반 횟수별 최대 100%까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조달청 : 건설 분야 既 발표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중점 추진

- 조달청의 2026년 업무계획은 ①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②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③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④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4대 추진 원칙에 기반한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함.
- 이 중 공공공사 조달과 연계한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 부처 합동 또는 조달청 단독 既 발표한 정책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의 차질 없는 이행 중심의 내용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통해 구체화하여 제시됨.

〈표 5〉 공공공사 조달과 관계된 조달청 2026년 업무계획

추진과제④ :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행정AX) 복잡·다양한 조달절차에 AI를 신속하게 도입·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AI 적용대상 업무 발굴, 업무별 AI 에이전트 도입 등 체계적 추진- ’26년에는 우선적으로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물품가격 조사·검토, 공사원가 검토 등에 AI 도입 추진
추진과제⑤ : 규제합리화 및 공공판로를 통한 성장 지원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값주기)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조달가격 합리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공공공사 특성에 맞게 간접공사비를 산정·적용하고, 기술형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협상기준가격을 현실화
추진과제⑥ :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강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담합징후 판단을 위한 통계분석 기준 개선 및 통계 공유기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신고 활성화- (조사) 신고조사 외 불공정행위 의심 건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거부·불응 기업에 과태료 부과 및 중기부·관세청 등과 합동조사 실시- (제재)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약금 차등화 및 가중·감경을 적용하고, 계약보증금 할증, 제재효력 승계 등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

○ (공정평가) 공공조달 평가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평가위원 3종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위원단 운영 및 공무원 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위원 책임성 제고

* (모니터링) 설계공모 등 대상사업 추가, (신고센터) 암호명 제보 도입, (이력관리) 불공정 평가 진단 모델 및 기준 개선을 통한 선별 정확도 제고 등

추진과제⑦ :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中

○ (건설 분야) 공공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

- 리튬배터리 교체 등 고위험 공사의 발주방식을 개선(일반경쟁 → 실적제한)하고, 고난도 공사의 시공계획서 안전·품질 분야 평가배점 상향
-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과정에서 안전사항 누락, 구조계산 및 설계 오류 등을 집중 점검·시정
- 조달청 관리 현장에 지능형 영상분석, 자동 화재 감지 센서 등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상시 안전 감시체계 확립
- 기획, 설계, 시공 등 공사발주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활성화

추진과제⑧ : 탄소중립 등 사회적 책임조달 구현 中

○ (탄소중립) 녹색 공공조달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수행, 건물 유형별 에너지 최적화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29년) 등을 통해 친환경 공공건축물 확산

* 조달청-국토부 MOU를 통해 공공건축물 에너지최적화 컨설팅 진행 중(~'29년, 50건)

○ (사회적 책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운영

- (지역업체 수주) 지역의 공사는 해당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하도록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상향(100 → 150억 원)하고, 지역업체 참여 가점 확대
-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공사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 균절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민간건설까지 개방 추진
 - *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SW용역 계약의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 청구·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좋은 일자리)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안정 기여 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 대한 우대 강화
 - * ‘가족친화 인증 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등

추진과제⑩ : 미래 대비 공공조달 인프라 확립 中

○ (법·제도·인력) 공공조달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 (공공조달 기본법) 공공조달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관된 조달정책 추진 및 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 재정 효율성·전략적 운용 등 공공조달 4대 기본원칙 명시, 전략계획 수립, 각종 우대조치 등 조달특례 성과관리 도입 등을 포함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2026년 국토부 중점 주택정책⁵⁾

-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건전성 제고'는 9·7 대책, '공공주택 공급'은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유사성 높아… 향후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및 고품질 주택 공급을 견인하는 정책 실현 기대 -

김성환(연구위원 · shkim@cerik.re.kr)

주택시장 안정 정책 : 공급 가속화 및 도심 내 가용 부지 확보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 조기 확보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5만호, 분양 2.9만호 추진으로 국민의 공급 체감도를 극대화함.
- 착공 5만 호는 당초 '25년 9·7 대책에서 제시한 '26년 5.2만호 착공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며, 분양 2.9만호는 9·7 대책의 2.7만호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후속조치^(11.26 발표)의 목표 물량과 동일함.

〈표 1〉 2026년 공공택지 분양 계획(잠정)

(단위 : 호)

지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합계
서울	-	-	1,305	-	1,305
경기	2,383	9,607	6,267	5,502	23,759
인천	626	1,190	972	802	3,590
수도권 합계	3,009	10,797	8,544	6,304	28,654

주 : 원 자료명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안)"이며, 문맥상 정부의 주택 공급 관리 기준(착공)이 아닌 '분양'으로 해석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1.26),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판교 하나 더"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용도전환도 첫 윤곽… 공급 성과 본격화"

-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1.3천호) 첫 입주로 시장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 공급 효과를 가시화함.

〈표 2〉 3기 신도시 지역별 최초 입주 예정 시기(입주 예정 시기 도래 순)

신도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최초 입주 시기	2026년 12월	2027년 12월	2028년 1월	2028년 8월	2029년 6월(예정)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각 신도시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 한편, 서울(서리풀) 및 경기 수도권 일대 신규 택지(5만호 규모)의 인허가를 신속히 착수함.
-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9·7 대책의 서리풀(2만) 지구를 포함하고, 과천과천(1만) 지구를 제외하는 대신 경기권 3개 신규 택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의정부용현, 총 3만호)를 추가하여 전체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계획을 확정하였음.

5) 본 고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025.12.12)" 자료 중 주택정책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임.

● 도심 내 주택 공급원 다변화 및 규제 완화

- 먼저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준공 30년 이상 청사는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이를 통해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30년까지 약 2.8만호 수준으로 전망되며, 직주근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소구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 '26년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며, 이후 '28년 중 계1단지, '29년 가양7, '30년 수서·변동 2등 '30년까지 2.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함.
-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개편할 예정임(감평업체 선정 합리화, 초기사업비 이율 인하, 도시분쟁 조정 역할 확대 등).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0.6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자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단기 수급 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축매입주택 7만호(~'27년 까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신축매입주택 착공 목표 14만호 중 절반을 2년 내 집중 공급함으로써 시장 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임.

주거복지 선도국가 완성 : 공적 주택 확충 및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 공적 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혁신

- 향후 5년 동안 부담 가능한 공적 주택⁶⁾을 최소 110만호 공급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을 목표를 제시함. 이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임.
- 특히 2026년 중 공적 임대 15.2만호(공공임대 14만,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를 집중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임을 언급함.
- 그간 소형으로 건설하였던 임대주택의 평형을 60~8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고품질 설계를 통해 '보편적 주거 기본권'을 보장함.
-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한편, 소득·자산 전환율을 도입(27)하는 등 입주 기준을 합리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함.

● 수요자 맞춤형 주거 사다리 강화

- (청년/출산) 역세권의 청년 특화 임대주택 및 대학 인근 행복기숙사를 공급하는 한편, 초등학교 인근 육아 친화주택,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시범 주택을 2026년~2027년 중 착공할 예정임.
- (고령자/취약계층)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를 도입한 고령친화 주택 3천호를 공급하며 주거 급여 대상을 기존 195만 가구에서 202만 가구로 확대함.

6) 법적 정의, 혹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원 출처인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언급을 종합하면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통칭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 건전성 제고 : 전세사기 근절 및 주거 환경 개선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 계약 전 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전세가율 요건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함.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임대 무상거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단 및 품질 관리

- 2026년 1월부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본격 운영하고,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역량을 집중함.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토지 매매 90% 확보 시 사업 착수)하여 조합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

● 주거 품질관리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사후검사 샘플링 비율을 기존 2%에서 최대 5%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품질 점검 시기를 앞당겨 입주 전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

시사점 :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민관 협력 기회 확대

●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 금번 업무보고는 기존 9·7 대책과 「123대 국정과제」의 핵심 기조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함.
- 특히 경기권 3만호 추가 발굴 등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한 업계 활력 제고

- 3기 신도시의 순차적 착공·분양 계획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신축매입주택의 2년 내 조기 공급(7만호) 역시 소규모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신속한 예산 집행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제 사업 착수 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공사비 상승 및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함.

●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및 고품질 주택 공급 견인

- 노후 청사 복합개발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도심 내 공급원 다변화 정책은 민간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전망임.
- 지자체 협력 체계 가동과 미래도시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업성이 보장된 우량 부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주거 기본권'에 부합하는 고품질 주택 공급에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희망함.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2)

전영준 연구센터장(yijun@cerik.re.kr)
김민주 부연구위원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한 달간(‘25.11.25.~11.28.) 국회에서는 평소의 약 2배인 1,115건의 법률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건설 관련 입법 또한 증가하여 107건의 유관 법률이 입법 발의됨.

이달에도 계속적으로 건설 산재 저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로 발의되었으며, 그 외 최근 산업 내 여러 논란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3번째 입법안이 발의된 점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잇따른 입법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임.

이슈 1 다시금 재점화된 공공공사 지역상품권 대금 지급…계약상대자 피해 우려

● 지난 2016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연내 순환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공공사 도급 금액 지불 시 지역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면서 최초 공공공사에서 지역상품권 지급 시도가 이루어짐.

- 이와 관련하여 이듬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합동 감사¹⁾를 통해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제6조제1항)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출원이 지출원인 행위에 의해 지출할 때는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함.
- 즉, 당시 관련 조례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지역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함.²⁾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상품권으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됨.

1) 행정자치부(2017.6),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강원도)

2) 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자치부는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관급공사 등의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시 상품권 구매 등으로 같은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 이후의 집행단계에 있어 조례를 근거로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다시금 공공공사에서 대금 지급이 ‘현금’ 지급이 아닌 ‘상품권’ 지급으로 문제된 것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문제 지적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임.
 -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24년간 약 3.6억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공사·용역·비품 구입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위반하여 상품권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함.
 - 이는 당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지역상품권 구매 비율이 평가 항목으로 반영³⁾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기업의 잘못된 선택 사례라 할 수 있음.
- 공공공사에서의 대금 지급 중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입법이 발의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vs.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이익 제한’ 간 논쟁이 다시금 점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계약 대금 지급 시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 이 중 우선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에 지자체가 계약하는 공사·물품·용역과 그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 이와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5657호) 또한 동일 사유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해당 입법안은 모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계약에서 대금 지급 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허용하는 입법안으로 지역내총생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지차 발주 물량의 일정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일정 수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으로 발주된 공사가 아닌 경우 타 지역 소재 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에게 속칭 불법 ‘상품권깡’을 사실상 강요할 뿐만 아니라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상품권을 감수하고 입찰에 응한 업체만 선정하는 것이기에 계약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음.

3)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지역 상생 협력 노력 활동’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을 가산점 반영.

- 더욱이 최근 공공공사의 낮은 이익률(25년 9~10월 170개 기업 조사 결과 최근 준공 공공공사의 46.4% 적자공사 상황으로 응답)을 고려할 때 일정 비율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도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이 외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및 하도급 금액의 경우 현금 지급이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기타 경비 중 일부인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에 국한)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입법으로 사료됨.
-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 추진 기조에 발맞춘 입법안은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사료되나, 공공계약의 핵심 원칙인 '상호 대등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이슈 2 중복규제 및 과잉 처벌의 대표산업 건설, 규제·처벌 합리화 기반 마련 기대

- 지난달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는 입법안(「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3918호,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됨과 더불어 이달에는 과도한 벌칙 규정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됨.
 -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587호)이 그러한데 해당 내용은 현행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지 않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강화하는 경우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임.
 - 입법안에서는 규제의 신설·강화와 더불어 벌칙 규정 또한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자유로 제시하고 있음.
- 대표적 규제 산업인 건설산업의 경우 특히 이러한 경우가 많으며, 최근 그 경향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임. 그간 규제당국은 건설공사 사업재해, 시설물 안전, 하도급 등 관련분야의 문제 발생 시마다 규제의 신설·강화와 함께 처벌 수준의 상향 또는 신설을 함께 마련하여 중복 처분이 만연한 상황이며, 처벌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표 1〉 건설 분야 규제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추진 사례 : '23년 국토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中〉

구 분	현 행	개 정
등록말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으로 <u>5년간 3회</u> 처분 시 등록말소 (3 Strike-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로 <u>5년간 2회</u> 처분 시 등록말소(2 Strike-Out) * 3 Strike-Out 규정은 현행 유지
결격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불법하도급으로 3회 처분 시 등록말소 후 <u>1.5년간 등록제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 2회 위반 시 등록말소 후 <u>5년간 등록제한</u>
원도급사 관리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관리 의무 <u>선언적 규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 구비 등 구체적 관리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재하도급 지시·공모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u>30%</u> 이하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재하도급 지시·공모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u>40%</u> 이하 과징금
발주자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도 공사에 <u>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u> 계약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시 계약해지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 지시·공모+부실시공+사망사고 시 피해액의 <u>5배</u> 범위에서 <u>손해배상</u> * 불법하도급 지사·공모 없는 경우 3배 범위
처벌수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한 자 <u>3년 이하 징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한 자 <u>5년 이하 징역</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 지시·공모한 원도급사 및 발주자 <u>5년 이하 징역</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u>1년 이하 징역</u>

● 규제와 처벌 수준에 대한 합리화와 무분별한 남설 방지를 통한 피규제자의 준수 고취 유도를 위해 입법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18호 및 15587호)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규제·신설 강화에 따른 피규제자 피해 최소화 및 타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해소를 위한 다음 법률의 입법 추진을 건의하며, 이를 통한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의 초석이 마련되길 희망함.

- 건설산업 관련 규제의 경우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라 타 법령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대표적으로 공기·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시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 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빈번), 이를 외면 하여 피규제자 일방의 피해 발생이 빈번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함.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개 정 안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1. (생략) 11의2. (신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⑥ ----- ----- ----- 1.~11. (현행과 같음) 11의2.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의 피해 경감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타 법령 개정 필요 사항

이슈 3 1차 관계(원·하도급자)에만 머물렀던 하도급 규제, 드디어 사각지대 다루나?

- 건설공사 자금이 발주자에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나아가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확보 요구는 지속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이들 이해관계 중 특히 원·하도급 관계에 주목하여 대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공사에서 정당한 대가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11.21).
 -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 시 원도급자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12.19).
- 국회의 경우 역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이에 따른 연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입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해 왔음.
 - 우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공공 발주 공사에서 민간 공사로 확대하려는 입법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최근 이용우 의원(의안번호 제14564호)과 엄태영 의원(의안번호 제14910호)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안 역시 이러한 흐름에 포함됨.
 - 또한,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4745호)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법정관리 절차 개시 등을 신청하는 원도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경우 또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사유에 포함토록 함.
 - 한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정의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을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됨(윤종오 의원, 의안번호 제14810호).
- 그간의 정부 부처 조치와 입법 동향을 종합하면 하도급 구조 전반의 근본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이나 일부 거래 단계의 보완에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 발표된 공정위 대책 등을 계기로 당분간 유사한 취지의 원·하도급 규제 강화 중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단, 재하도급을 명시적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논의가 처음 제기되었다는 부분은 그간 제도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사각지대 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원·하도급 간 1차 거래 관계의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하도급을 통해 형성되는 2차 거래 관계로까지 제도적 보호 범위를 확장하여 건설공사 전반의 다층적 거래 구조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의 공백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11.25.~'25.12.28)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산업 기본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564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실정이기에 개선 필요 (제안방향)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 중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서 50억원 이상(법 시행 1년 차 300억원 이상, 시행 2년 차 100억원 이상, 3년 차 이후 5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안 제34조제9항, 안 제98조의2 및 부칙 제3조) 건설기계 대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안 제32조제4항) 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안 제35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중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지급 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10항)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과 원도급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 정비(안 제34조제2항 및 안 제68조의3제2항)
「고용 보험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566호(정부)] ('25.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방향)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종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방법 등 변경(안 제45조제1항) <p>* 본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4568호)의 의결을 전제</p>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568호(정부)] ('25.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방향)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월의 고용·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 등 변경(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9제1항·제2항) ▪ 근로자의 보수신고 방법·주기 등 변경(안 제16조의10제1항·제2항) <p>※ 본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6호)의 의결을 전제</p>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578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 - (제안방향)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5조 제3항 후단 신설)
「건축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583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5.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 - (제안방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3조제3항)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584호(복기왕 의원 등 10인)] ('25.1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 - (제안방향) 기반시설관리 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8조)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621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5.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이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의 사용 대상에 이를 추가(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주택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627호(윤종군 의원 등 12인)] ('25.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등의 사유로 인해 불투명·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 발생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안 제14조의5 신설 등)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30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 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수반되어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 존재 상황 (제안방향)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근로 기준법」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45호(김기표 의원 등 11인)] ('25.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 별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이와 더불어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약용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 (제안방향)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07조 및 제109조)
「지방 계약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56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5.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지난 '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행정안전부 발주)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공급액 비율이 1%p 증가 시 적용 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 수(2.1%)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현 정부 또한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既 마련 이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법 개정 필요 (제안방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8조제4항) <p>※ 본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p>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57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5.1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중 허나, 지난 '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행정안전부 발주)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공급액 비율이 1%p 증가 시 적용 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 수(2.1%)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

법률명	주요 내용
	<p>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p>※ 본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p>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77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 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로 최근('25.9.7)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제안방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5항 신설)
「국가 계약법」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79호(김태년 의원 등 13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중 허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제안방향)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안 제1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80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추진 (제안방향)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686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률명	주요 내용
	<p>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5조의2 신설)
「건설산업 기본법」 차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18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방향)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83조제11호) <p>※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p>
「전기 공사업법」 차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19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재 (제안방향) 현행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p>※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p>
「산업안전 보건법」 차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20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①)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나, 폭염·한파 등 악천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근거 불명확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밖에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근거 부재 (제안방향)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개정(안 제159조제2항) <p>※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의 의결을 전제</p>

법률명	주요 내용
	<p>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p>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21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재 (제안방향) 현행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p>※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의 의결을 전제</p>
「정보통신 공사업법」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22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방향)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법 제66조제1항제14 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p>※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472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p>
「소방시설 공사업법」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23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재 (제안방향) 현행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27호 신설) <p>※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4722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p>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24호(윤재옥 의원 등 10인)] ('25.1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 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 기본법령상의 실외 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개선 필요 (제안방향)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건설산업 기본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745호(윤종오 의원 등 15인)] ('25.1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회생절차 등)를 신청하는 건설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이후 매년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5년에도 4월까지 이미 11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시공사(원청)가 법정관리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는 물론 장비·자재업체 등 관련 업체까지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 - 이에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 현행 제도는 공공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시공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자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이 국토교통부령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원도급자가 법원에 화생절차나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그 결과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자와 관련 협력업체에 심각한 자금경색과 부도 위험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원도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1항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752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5.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중 - 그러나,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안 제35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754호(윤재옥 의원 등 10인)] ('25.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 - (제안방향)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완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765호(박정 의원 등 11인)] ('25.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 내포 - (제안방향①)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
규제처벌 강화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안방향③)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 도입(안 제51조, 제52조, 제169조)
「건설산업 기본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779호(윤종오 의원 등 14인)] ('25.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경우 현행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특히,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공종별 분리발주 공사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동일 현장에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 제기 - (제안방향)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16호 및 제87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789호(서일준 의원 등 10인)] ('25.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에 대한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방식은 지역별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 - (제안방향①)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 (제안방향②)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가지)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 부여(안 제50조의3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790호(우재준 의원 등 10인)] ('25.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 -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반복 제기 - (제안방향)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안 제37조제1항)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안전 특별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802호(윤종오 의원 등 14인)] (25.12.3.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얹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기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 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 - (제안방향)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른바 '속도 전'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과 더불어 시공자와 하도급자에게도 공정별·단계별 안전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와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또한,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 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안전을 점검·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지원 및 공공 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는 설계자 등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토록 규정(안 제8조제1항) ▪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9조) ▪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 ▪ 시공자가 감리자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 감리자가 시공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밖에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제5항) ▪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20조) ▪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며, 그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안 제26조 및 제27조) ▪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이때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안 제37조) ▪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 유도(안 제41조 및 제42조) ▪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43조)
「공정 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803호(윤준병 의원 등 10인)] (25.1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중

법률명	주요 내용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현행 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감면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은 과징금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중한 제재를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 ▪ 이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만큼 보완 필요 - (제안방향)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 유지하기 위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건설산업 기본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810호(윤종오 의원 등 15인)] ('25.1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자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그럼에도 현행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 발생 중 -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과징금 등 손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 (제안방향)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물량에 기초한 계약 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과 더불어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근로 기준법」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839호(김태선 의원 등 10인)] ('25.1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해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이며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추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을 한 번이라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지속 제기 - (제안방향) 현행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43조의2제1항, 제109조제2항)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842호(김태선 의원 등 10인)] ('25.1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봉과·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제안방향)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봉과·화재·폭발, 유해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5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843호(김태선 의원 등 10인)] ('25.1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나,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 (제안방향)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2조의2 등)
「하도급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902호(정무위원장 대안)] ('25.1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 완화 목적 '23.10.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 (제안이유②)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명의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 중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하도급자가 위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제안방향)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조제17항 신설, 제13조의2 등)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910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5.1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건설업의 임금 등 체불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해도 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 위협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파탄 등 추가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인 2조 448억원, 피해자는 28만 3천명에 이르며, 이 중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은 전체의 23.4%가 넘는 약 4,780억원 규모 - 현행법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사를 가리지 않고 임금 등 건설대금의 체불, 지연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및 직접지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제기 - (제안방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안 제34조제9항)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1건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모든 공공 및 민간부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안 제35조제1항)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자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주택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915호(김정호 의원 등 12인)] ('25.1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 중 - 그러나, 해당 고시에 따른 실질적 인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아 세대 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심각한 거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며, 특히 현행 고시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한 실정 - (제안방향)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 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등)
「조달사업 에 관한 법률」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931호(진성준 의원 등 11인)] ('25.1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러나,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 건을 넘겨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 - (제안방향)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932호(진성준 의원 등 10인)] ('25.1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법률명	주요 내용
	<p>필요하다는 의견 대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 규정이 불명확한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기관장의 경영 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 - (제안방향) 공공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 목적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 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945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5.12.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반복 -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 - (제안방향)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948호(정동만 의원 등 10인)] ('25.12.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인근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 (제안방향)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 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 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지방세 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969호(윤재옥 의원 등 10인)] ('25.12.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5년 9월 현재 2만 7천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는 당시 약 2만 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8.12.31.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안 제33조의3)
「산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4974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2.5.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보건법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 이행을 강화할 필요 (제안방향①)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 (제안방향②)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기준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61조의2 신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4987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5.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 제기 (제안방향)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개정 (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02호(장철민 의원 등 10인)] ('25.12.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지역 등 신탁업자의 부실·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 (제안방향)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 등 전체 회의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2/3 이상 찬성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의 요구로 시장·군수 등이 소집하도록 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10호(서범수 의원 등 10인)] ('25.1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의 수행 실적 등 측량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 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 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 정보 종합 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나,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 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 실적을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법률명	주요 내용
	<p>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 실적이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원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10조의4 신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013호(전현희 의원 등 10인)] ('25.12.9.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인 증축·개축 등이 불가하여 구조안전성 부실, 재난 취약,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국한하여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 - 그러나, 홍보·안내 등 부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 시행 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 - (제안방향) '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이 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안 제3조)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4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안 제5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안 제7조) ▪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안 부칙 제2조)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033호(김정호 의원 등 10인)] ('25.1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162조의2 등) <p>※ 본 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p>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034호(김정호 의원 등 10인)] ('25.1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 기간이 형사적 제재 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하여 사업장 폐업, 장기간의 노동관계 분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멸시효 경과로 체불임금을 지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중이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안 제49조)

법률명	주요 내용
	<p>※ 본 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p>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차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35호(김정호 의원 등 10인)】 ('25.1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퇴직급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나,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중소기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전 과정에서 권리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안방향)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10조) <p>※ 본 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p>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47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규정 중이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 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안방향)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도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안 제13조제5항·제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49호(김형동 의원 등 12인)】 ('25.12.9.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노동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업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 (제안방향)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고 사건의 제기·조사·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법률명	주요 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52호(박수민 의원 등 12인)] ('25.12.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지정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중이나, 정치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상 광역철도 구간을 연장하여 교통 수요에 따라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하여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수도권 등에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메가시티 광역생활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역 신설이 표정속도 요건에 가로막히는 문제 발생 (제안방향) 광역철도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단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유도(안 제2조제2호나목 단서 및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53호(박수민 의원 등 12인)] ('25.12.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납 기준, 분납 방법 등을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런데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제안방향)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 부담 경감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유도(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058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2.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중이나, 급변하는 건설 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 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5년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3조제1항)
「대기환경 보전법」 차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131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 ('25.12.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치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 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개정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 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안 제43조제5항)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33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 ('25.12.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뿐 아니라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 노력을 이를어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현행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좀더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 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의무화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p>(부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격체계, 지원 요건을 포함한 실행체계 보완 내용을 조속 입법 ▪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방안을 마련 ▪ 고용노동부는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제1항의 유해·위험 요인 확대 방안을 '26년 말까지 국회에 보고
「하도급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48호(이종배 의원 등 10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 중이나, -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 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 비용,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해 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도급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하도급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법률명	주요 내용
「상생 협력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151호(이종배 의원 등 10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원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운송·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 발생 중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 (제안방향) 주요 경비는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 행위를 금지(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155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 중 허나, 건설근로가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상황으로 조사 (제안방향)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안 제26조제1항·제2항)
「소음·진동 관리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178호(윤상현 의원 등 10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총간소음을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총간소음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중이나,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총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개선 필요 (제안방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총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안 제21조의2제1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179호(김병주 의원 등 14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이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례로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 외에도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 - (제안방향) 현행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조 제2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82호(조인철 의원 등 13인)] ('25.12.11.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척도로써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민간에서의 연구 및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기관의 지정, 통계의 작성,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해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해외 사업자 유치·체류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해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84호(김용태 의원 등 12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 - (제안방향)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유도 (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86호(한준호 의원 등 13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법률명	주요 내용
	<p>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제4항 신설)
「건축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87호(한준호 의원 등 10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혜택 부여 중이나, - 건축사 1명이 한 해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88호(박홍배 의원 등 14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법령에서는 그 대상 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 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189호(박홍배 의원 등 15인)] ('25.12.1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 - 특히 건설공사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원도급자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제안방향) 건설공사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72조 및 제175조)

법률명	주요 내용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196호(엄태영 의원 등 12인)] ('25.12.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 중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용적률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세대수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 (제안방향)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시적으로 허용(안 제2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00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2.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 중이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제안방향) 특정 절기에 한정치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제7호)
「건설기계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05호(문진석 의원 등 14인)] ('25.12.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 중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건설기계보다 신고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벤치마킹 필요 (제안방향)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07호(민홍철 의원 등 12인)] ('25.12.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 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높이제한,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필요성 제기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의무를 가중하여 부과 중이나, 실제로 5만㎡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천세대를 대부분 초과하게 되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당 3㎡의 기준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 존재 (제안방향)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률명	주요 내용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213호(권영진·복기왕 의원 등 20인)] ('25.12.12.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붕괴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 쇠퇴를 유발시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24년 기준 전국 빈집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으며, 사업 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관련하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사용 용도, 발생원인 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 법령이 운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주기 및 관리 체계 등이 상이하여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관리에 한계 발생 상황 - 또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주로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 - (제안방향)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법률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안 제1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시장·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해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안 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은 매년 빈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시장·군수 등에게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제18조) ▪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6조) ▪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안전조치·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관리 등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1조) ▪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이를 등록하도록 규정(안 제41조 및 제42조) ▪ 시장·군수 등에게 빈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부여(안 제54조)

법률명	주요 내용
「주택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35호(김희정 의원 등 26인)] ('25.12.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중 허나,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 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해 조치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제안방향)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41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36호(송기현 의원 등 10인)] ('25.12.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중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치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 (제안방향)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건축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53호(엄태영 의원 등 11인)] ('25.12.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①)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 중 허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장 및 창고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 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 (제안이유②) 지하층이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 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 (제안방향①) 공장 및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안 제50조제3항) (제안방향②)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 및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제안방향③) 내화체움구조는 건축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으로 나누어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안 제62조)
「공동주택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55호(엄태영 의원 등 11인)] ('25.12.15. 일부개정 발의)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해 전기통신 사업자, 방송 또는 신문사업자 등에게 문자·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신문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러나, 기존 재난 예보·경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로 수동적인 방식의 알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재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전국 국민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재난 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또한,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잘못된 안내로 인한 입주자 등의 유독가스 흡입 등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 - (제안방향)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85조제1항)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268호(김종민 의원 등 10인)] ('25.12.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교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택 건설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와의 협의 절차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철도공단이 소음방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철도가 인접한 지역에 주택이 건설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주 후 발생하는 철도 소음 관련 민원·분쟁에 대응해야 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 대응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또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는 사전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설치 과정에서 철도 운행 중단·제한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 - (제안방향) 주택건설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그 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42조)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272호(김도읍 의원 등 10인)] ('25.12.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법률명	주요 내용
「지방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87호(강준현 의원 등 10인)] ('25.12.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중 이 경우 「국가계약법」에서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중으로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인 현행법의 경우 이와 달리 입찰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제안방향)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감면을 국가계약과 동일하도록 개정(안 제31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291호(민홍철 의원 등 11인)] ('25.12.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안 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334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12.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과태료·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 중 허나,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상황 (제안방향) 건설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336호(천준호 의원 등 11인)] ('25.12.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제안방향)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기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35조제2항)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371호(정부)] ('25.12.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물권·채권 편은 거

법률명	주요 내용
	<p>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여 해결하거나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현대화를 위해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칙·물권·채권 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p>-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①) 의사능력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748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협준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제한능력자와 함께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반영 - (제안방향②)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중 “사실인 관습”만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해석(자연적 해석)”, “객관적 해석(규범적 해석)” 등의 법 원칙을 명문화하여 「민법」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안방향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의 확충(안 제1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를 명시하는 등 판례와 학설을 통해 허용되어 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안방향④)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안 제110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부당한 간섭을 받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안방향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채무의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본인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 - (제안방향⑥)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4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와 통설은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었는바,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선의의 제3자를 보호 - (제안방향⑦)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급부대용권 인정(안 제37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급부대용권을 가진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환율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율에 따르도록 규정 - (제안방향⑧)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 도입(안 제3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과 「상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을 고정하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⑨)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6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채권의 기본적 효력으로서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 - (제안방향⑩)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예외적 원상회복 허용(안 제394조, 현행 제764조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금전배상을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 외에도 금전배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전보(填補)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에 예외적인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 규정을 두어 금전배상 외의 원상회복 청구를 일반적으로 인정 - (제안방향⑪) 전보배상 및 계약 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395조 및 제5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그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에 따르더라도 채권자의 배상 이익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는 점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자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에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계약불이행 시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서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사유를 이행불능, 확정적·종국적 이행거절, 자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로 통일적으로 규정 - (제안방향⑫) 지출 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95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에 대신하여 인정하던 “채무가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신뢰이익의 배상)”을 명문화하여,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간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제안방향⑬) 과실상계에서 손해경감의무의 확인(안 제39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바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판례와 통설 명문화 - (제안방향⑭)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정비(안 제39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판례의 법리를 규정에 반영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 - (제안방향⑮) 위약금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9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하는 위약금 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약벌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위약금의 약정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와 관계없이 예정된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 명확히 규정 - (제안방향⑯)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안 제399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와 통설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을 인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제안방향⑰)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528조부터 제533조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하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청약이 철회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화자 사이의 청약 효력에 관한 근거를 직접

법률명	주요 내용
	<p>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낙에 대해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에도 승낙으로 인하여 청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함을 규정 <p>- (제안방향⑯)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안 제53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채권자가 일반적인 계약책임 법리에 따라 이행을 갈음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p>- (제안방향⑰)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36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무계약에서 먼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에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 외에 계약 성립 전에 있었던 사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p>- (제안방향⑯)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수정 및 해제·해지 허용(안 제538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하고 다수 해외 입법례와 국제규범 등에서 수용된 계약 수정 청구권을 함께 반영하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p>- (제안방향⑲)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539조, 제542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장래에 특정될 수 있는 자를 위하여 서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례와 통설의 법리를 명문화 ▪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행청구권 외의 다른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p>- (제안방향⑳)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반 규정 신설(안 제54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법리임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고 개별 계약에서 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만 두고 있는바,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를 반영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 <p>- (제안방향㉑)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4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에서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금전을 반환할 경우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이 아닌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원상회복으로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도록 하고, 원물반환 불능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규정 <p>- (제안방향㉒) 담보책임 규정의 전면적인 계약책임화(안 제569조부터 제576조까지, 제667조, 제670조 및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 현행 제577조,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 제668조 및 제671조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담보책임이 계약책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일반 계약책임 규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율을 두고 있어 이론적 혼란이 있었는바, 판례·학설 및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 규정 및 일반 해제 규정에 따라 매수인의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독자적 규율 문제를 해소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계가 복잡하고 요건이 불명확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하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하자를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만 나누어 구제 수단 별로 조문을 구성함으로써 담보책임 규정을 단순화·합리화 ▪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매수인의 원칙적인 구제 수단으로 매도인에게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추완이행청구권을 도입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금감액청구권은 추완이행의 청구와 무관하게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수인의 구제 수단을 확대 ▪ 현행 담보책임 규정은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을 재조정하여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 기간의 제한을 존속시키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도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칙을 유지하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되는 때에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이 완성된 때에 그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p>※ 본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0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69호)의 의결을 전제</p>
규제처벌 강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386호(최혁진 의원 등 11인)] ('25.12.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차제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수탁·위탁거래, 입찰·제안요청, 투자 협의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유용의 경위와 고의·과실, 손해배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 (제안방향) 기술자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기술자료 유용 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정의하여 별도로 규율함과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및 공적 법률지원 등 특례를 도입(안 제2조제9호·제9호의2, 제25조제5항, 제28조의1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1까지 신설)
규제 강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402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 - 현행법은 이러한 기술탈취·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혼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으로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현장에서 지속 - 이에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 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기계 관리법」 처벌 강화	<p>입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하도급법」과 같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의6,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0조의9, 제40조의10 신설) ▪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의무화(안 제40조 제5항 신설 등)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의12 신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 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의13 신설) ▪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안 제25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403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방향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 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등) - (제안이유·방향②) 건설 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안 제28조, 제40조, 제41조 등) - (제안이유·방향③)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군·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 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안 제34조의2 등) - (제안이유·방향④)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 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및 행정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 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압류 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압류 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 등록을 하도록 명시(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건축사법」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404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방향①)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 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에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등)

법률명	주요 내용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방향②) 건축서비스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팡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에 공공 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 [의안번호: 제15406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제안이유②)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현행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 정비하여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기에 현행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제안이유③)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필요 - (제안방향) 대안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8호 신설)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안 제15조)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신설) ▪ 선도지구 지정 요건 중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수정(안 제18조제3항) ▪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특례 도입(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종합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제3항) ▪ 시·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안 제22조) ▪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9조 신설)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40조 신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407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방향①)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 방지(안 제25조제1항) - (제안이유·방향②)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주택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413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방향①)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 설계 평가를 추가(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 (제안이유·방향②)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 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 (제안이유·방향③)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433호(기획재정위원장 대안)]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①)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제1항) - (제안방향②)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불자 조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 (제안방향③) 조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임금채권 보장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448호(김위상 의원 등 10인)] ('25.12.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도급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자와 연계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 중이나, - 법인 제도를 약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 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 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무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총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 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 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 의무를 지도록 개정(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465호(임호선 의원 등 14인)] ('25.12.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지난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안방향)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466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12.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철거에 소극적인 상황 (제안방향)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 부여(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478호(위성곤 의원 등 14인)] ('25.12.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소유·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 중 (제안방향)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와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안 제25조제5항 신설)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505호(박범계 의원 등 10인)] ('25.12.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 위반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원도급자 스스로 하도급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 대신 공정거래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제안방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하도급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 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안 제25조의6 신설 등) <p>※ 본 법률안은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6호)의 의결을 전제</p>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544호(우재준 의원 등 10인)] ('25.12.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치 않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중독·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 발생 - (제안방향)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행정규제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587호(김소희 의원 등 10인)] ('25.12.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 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시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 ▪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적극적 투자와 경영을 방해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운영인 상황 - (제안방향)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폐철도 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603호(김석기·민홍철 의원 등 38인)] ('25.12.24.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직선화·복선화·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키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키 위해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 폐철도부지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9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에 대해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선 5년이 경과된 폐철도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고,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며,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교환, 매각, 양여 등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

법률명	주요 내용
	<p>12조부터 제15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규제처벌 강화 「부동산 투자회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08호(박용갑 의원 등 12인)] ('25.12.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 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나,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안이유②)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같은 종류의 리츠 간 흡수합병만 허용하여 리츠 간 합병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리츠 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회사에 대한 조사·검사권을 부여하고, 리츠 경영진 등의 이해상충 행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 확대 필요 또한, 리츠 간 합병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리츠 대영화 및 부실 리츠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합병 전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점검할 근거 마련 필요 (제안방향) 주요 개정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업무,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보고 명령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9조제1항)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의 제한(제30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제31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제32조), 임직원의 행위준칙(제33조), 명의대여의 금지(제34조의2) 등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업인가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10호 신설) 부동산투자회사의 분할·신설·합병 및 다른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 간 합병도 허용하되, 합병계약 체결 전 합병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합병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43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14호(박상혁 의원 등 10인)] ('25.12.24.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공청사는 대체로 입지가 우수하나 저밀도로 조성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과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 그러나 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온 실정 (제안방향)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안 제8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차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복합개

법률명	주요 내용
	<p>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안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사업 중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 가능(안 제1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산 소유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등을 지정(안 제13조) ▪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사업, 산악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안 제14조) ▪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심의 또는 복합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2년 이내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안 제15조) ▪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 법률에 따른 심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실시(안 제16조 및 제17조) ▪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비용 분담, 소유 기관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재정지원 등을 정의(안 제22조) ▪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매각·대부할 수 있고, 사용 허가 및 대부의 기간은 최대 50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7조)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651호(손명수 의원 등 12인)] ('25.12.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향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향타기·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 - (제안방향) 향타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개정(안 제76조 등)
「주택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649호(손명수 의원 등 11인)] ('25.12.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자·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주택이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 중 -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운영 전반을 총괄·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 - (제안방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8조제5항)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648호(손명수 의원 등 14인)] ('25.12.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설정이라는 지적 제기

법률명	주요 내용
	<p>- (제안방향)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 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의무 신설 (안 제20조제2항 제3항 신설 등)</p>